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#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전원표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9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9년 6월 7일

3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2018.12.4. 일부개정) 및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(2018.12.7. 개정 고시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,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상위 법령 미반영 사항 등을 정비하여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미취업자 창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 사용허가(대부)를 할 경우 사용료·대부료 50퍼센트로 감경 확대(안 제32조제1항 제3호 아목 및 자목)
  -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

공유재산을 사용(대부)하는 경우(영 제13조제3항제21호·제29조제1항제20호)

-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공유재산을 사용(대부)하는 경우(영 제13조제3항제22호·제29조제1항제25호)

○ 농경지 수의매각 대상 명확화

- 농경지 수의계약 사용·대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 
(실경작자 → 농업인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)) (안 제29조)
- 공유지를 사용·대부 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 → 농업인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) (안 제40조)

○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 개선(안 제31조)

○ 기타 상위법령명,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바르게 정비·보완

## 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2018.12.4. 일부개정) 및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(2018.12.7. 개정고시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,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상위 법령 미반영 사항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미취업자 창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 사용허가(대부)를 할 경우 사용료·대부료 50퍼센트로 감경 확대(안 제32조제1항 제3호 아목 및 자목)
  - 농경지 수의매각 대상을 농업인으로 명확화 하였으며 (안 제29조)
  - 개정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개정하였음(안 제31조)
-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미취업자 창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 사용허가(대부)를 할 경우 사용료·대부료 50퍼센트로 감경 확대하는 것을 반영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